

주거복지 정보를 한눈에

부천시 주거복지사업 안내서

부천 시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안내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목 차

I.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소개	6
II.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주요사업	10
1.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사업 개요	10
2. 주거상담·사례관리	11
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
4. 긴급지원주택 지원사업	14
5.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16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18
7.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18
III. 공공임대주택지원	
1. 공공임대주택지원 개요	20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지원	22
3.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지원	24
4. 공공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26
IV. 주거비·주택금융 지원	
1. 정부주도 주거비지원	30
2. 경기도주도 주거비지원	33
3. 주택금융지원	35
V. 부천시 주거복지사업	
1.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39
2.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41
3. 그린뉴딜	45
4. 소규모 집수리 무상 서비스	49
5. 봉사단체·민간 집수리	51
6. 공동주택 지원	53
7. 에너지 등 지원	57
VI. 주거안정 지원서비스	
1. 금융관련 지원서비스	60
2. 법률 지원서비스	61
3. 생활 지원서비스	62
4.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3
5. 부천시 주민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연락처	64
부 록	
1. 부천지역 공공임대주택 현황	68
2. 주거복지 관련 사이트	72
3. 주거생활 가이드	74



1.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소개



I.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소개

1.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목적

- 주거복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 및 주거복지전달을 위한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 상담, 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9조(주거복지센터)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9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정보제공·상담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
5.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8.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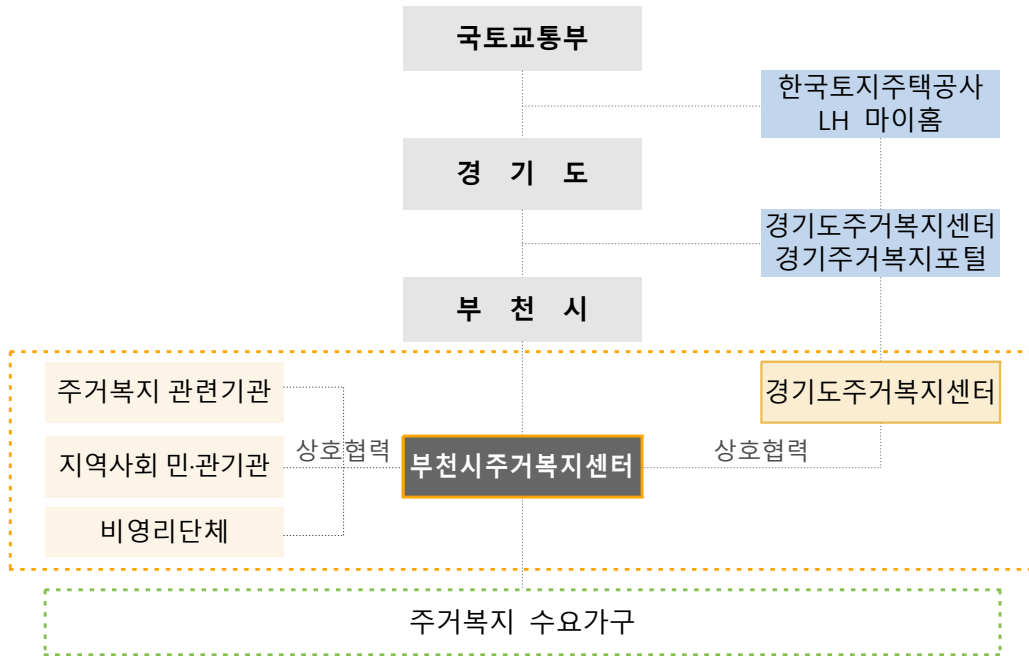
1. 부천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주거복지 운영 추진체계



4.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주거취약계층, 그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5. 주요업무

-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거문제 파악, 주거실태조사, 주택조사 등
- 주거중심의 정보제공, 상담 및 통합 사례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침수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내 복지기관, 주거관련 단체, 현장 활동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확보 및 협력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수행
-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 홍보·교육 주거복지 실무자, 주민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지원제도, 주거지원 서비스 등 정책 홍보 및 교육
- 자원연계 필요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자원을 연계



II.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주요사업

II.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주요사업

1.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사업 개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합니다.

■ 주거상담·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다양한 주거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주거위기 극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침수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및 자립·정착 지원

■ 집수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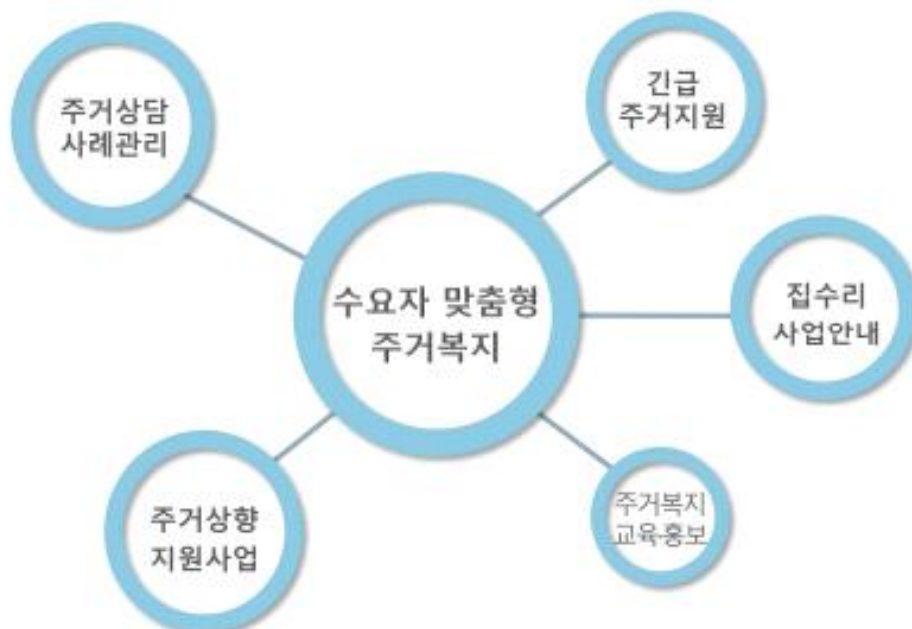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현 거주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주거수준 향상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주거복지 실무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주거문제 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한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서비스



2. 주거상담·사례관리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금융 등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및 주거문제 상담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쪽방,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 저소득층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소년소녀가정 등

■ 상담방법

- 상담방식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안내 및 지원
-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 상담방법 유선, 내방, 방문
- 전화번호 032-340-0829
- 위 치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 內)

■ 상담분야

- 주거지원제도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집수리 등
- 주택금융제도 주택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기관 안내
- 법률지원제도 임대차분쟁 등 안내

■ 사례관리 지원절차



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거주자,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층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주거환경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 호우·홍수 등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층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 소득 (2022년 기준)	2,347,719원 (70%)	3,003,225원 (60%)	3,359,099원 (50%)	3,811,028원 (50%)	4,020,246원 (50%)
총자산·자동차	총자산 2억5천55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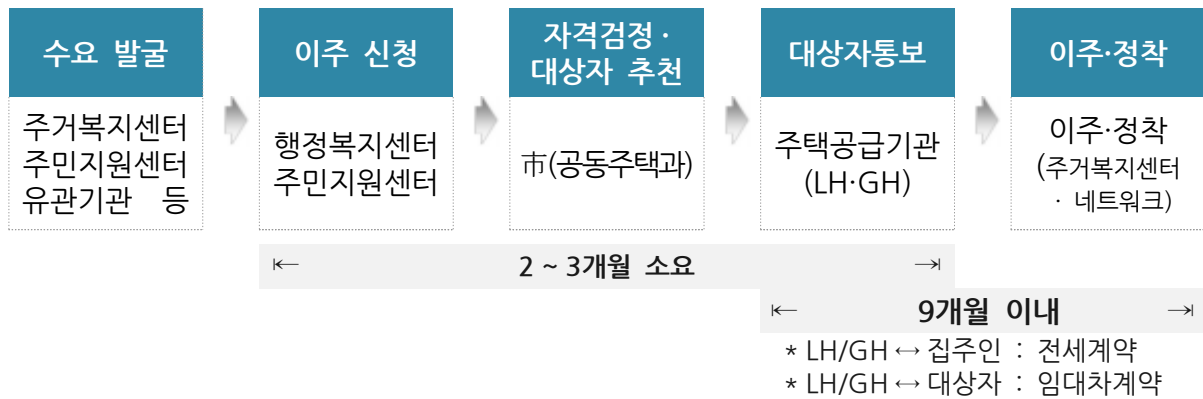
-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생필품(20만원), 이사비(20만원) 지원
-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지원, 주택 개보수(도배·장판 등) 지원

구 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주택유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면적	전용면적 85㎡(25평) 이하 · 1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 5인 이상 85㎡ 초과 가능	전용면적 85㎡(25평) 이하 ·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 5인 이상 또는 미성년자녀 3명 이상 85㎡초과 가능
임대료	· 임대보증금 50만원 → 0원 · 시중 월세 30%수준	전세지원금 1억2천950만원 · 임대보증금 50만원 · 전세지원금(보증금 제외)의 연1~2% 이자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 2년마다 재계약(최장 20년)	최초 계약 2년 · 2년마다 재계약(최장 20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원, 거주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절차



🔍 최저주거기준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주택의 기준으로,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를 충족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는 곳

가구원수	표준 가구구성	방의 구성	총주거 면적(m ²)
1	1인가구	방1, 부엌	14
2	부부	방1, 식사실 겸 부엌	26
3	부부+자녀1	방2, 식사실 겸 부엌	36
4	부부+자녀2	방3, 식사실 겸 부엌	43
5	부부+자녀3	방3, 식사실 겸 부엌	46
6	노부모+부부+자녀2	방4, 식사실 겸 부엌	55

- * 가구구성 : 3인가구의 자녀1은 6세 이상, 4인가구의 자녀2인은 8세 이상(남1, 여1)
5인가구의 자녀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6인가구의 자녀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 ** 방 구성 : 부부는 동일한 침실,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 근거법령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4. 긴급지원주택 지원사업

실직 등으로 임차료 체납, 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퇴거위기 등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화재, 자연재해 등의 재난 및 임대료 체납 등의 퇴거위기 등 주거위기가구
 - 재난위기가구 : 화재, 침수 등 재난·재해로 현재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퇴거위기가구 : 실직·폐업 등 소득 상실로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주택 경매·철거 등 강제집행으로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
 - 주거취약계층 :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퇴거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기사유 발생으로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 임대료 : 무상 ※ 공공요금(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사용자 부담
- 임대기간 : 3개월
- 지원물품 : (필요시) 생필품, 구급약 등 현물로 20만원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주거위기사유 증빙자료(화재증명원, 퇴거명령 내용증명, 월세체납확인서 등)

■ 지원절차



* 시(공동주택과) ↔ 대상자 계약체결

※ 입주허가 취소 및 퇴거조치에 관한 사항

- 입주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 전매, 전대, 허가받은 가족구성원 외의 불법 입주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신고서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천시 주거지원 상담기관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담을 통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대상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내용	가정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 행위자 고발 등 법률적 시행에 관하여 관계기관 도움 요청
신청방법	전화상담, 방문상담
문의	부천가정폭력상담소 032-667-2314 성주로 272(심곡본동)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석천로 13(상동)

□ 성폭력상담소

지원대상	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성폭력 피해자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병원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가해자 고소와 피해 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한 관계기관 협조와 지원 요청
신청방법	전화상담, 방문상담
문의	(사)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32-328-9713 소사로 779, 402호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032-655-1366 성주로 149(송내동)

□ 은가람빌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미혼모, 이주여성(母, 국적무관),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생활숙소(보호기간 3년) 무상 제공 생계비(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한함), 퇴소자 정착금, 위문금품, 난방연료비, 후원물품, 결혼후원금 등 자립지원사업, 심리·상담사업, 가족지원사업, 아동·청소년지원사업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은가람빌 032-343-4398 안곡로194번길 14

□ 케어안심주택

지원대상	주거문제로 지역복귀가 어려운 병원 장기입원자 ※ 고령자,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사회적 입원 최소화 및 안정된 주거독립을 위한 임시거처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복합돌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지원팀 032-625-9022

□ 엠마우스 커뮤니티홈

지원대상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및 통합돌봄(일상생활,보건의료 등)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지원팀 032-625-9022 엠마우스 커뮤니티홈 032-614-5200

5.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와 연계하여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 무상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지역** 성곡동(여월동, 작동, 고강본동, 고강1동), 뉴타운지구 해제 중 8개 구역
* 부천동(춘의1-1구역, 4~6통), 대산동(8~10통, 26~27통), 소사본동(3~4통), 성곡동(은행단지, 23~25통), 오정동(안동네)
- **대 상 자**
 - 5층 이하 노후주택(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빌라·연립주택) 실거주자
 - 비주택의 지하·반지하층 거주자
 - 복지기관 등 추천 가구 ※ 추천가구에 한하여 관내 전지역
- **지원제한**
 - 리모델링, 부속품의 신규설치 및 부속품별 원기능 유지 시 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적발 시, 재료비 환수 및 동네관리소 이용 제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재료비 기준 가구당 30만원
- 지원주기 : 2년
- 지원횟수 : 5회
- 지원항목 : 부속품 교체·수리(LED전등교체, 방충망 교체, 수도꼭지·수전 교체 등)

■ 신청방법

-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 032-340-0985)

■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심사·선정	서비스 실시
전화 또는 홈페이지	대상자 거주지 확인 서비스 이용이력 확인	소규모 집수리 지원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관리의 개념이 도입된 부천도시공사의 노후·불량주택 통합관리브랜드입니다.

• 동네관리소의 설치배경

노후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사용자(개인)의 관리가 한계를 벗어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의 대두로 설치하였습니다.

• 동네관리소의 역할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LED전등교체, 방충망 설치 등의 수리를 통해 생활편의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동네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전등기구	전등(LED전등 30W, 50W), 센서등, 직부등	전기배선	전기스위치·콘센트·누전차단기교체 환풍기 교체
안전시설	전선 몰드마감처리 화재감지기 설치·교체	수도·수전	수도꼭지, 수전, 고무패킹 물마개(폼업), 트랩, 역류방지트랩
문·문틀	도어스토퍼(말발굽), 경첩, 손잡이(도어락, 실린더)교체	화장실 욕실	혼합수전, 고압호수, 앵글밸브, 줄눈, 타일 탈락부분 보수
창·창틀	방충망, 경첩, 잠금장치	기 타	양변기 메지(백시멘트), 양변기 부속 실리콘마감처리, 벽 타공
다용도실	크랙부분 미장보수, 곰팡이제거		

❖ 계절별 특화사업

하절기	방충망, 해충방제방역	동절기	에어캡, 문풍지, 풍지판
-----	-------------	-----	---------------

동네관리 공구대여소

시민들의 원활한 주택 수리 지원을 위한 생활 공구 무료 대여서비스

- 지원대상 부천시민(신분증지참)
- 대여기간 3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대여가능시간 평일 10:00 ~ 18:00



• 전자우편 발송 housing@best.or.kr
• 팩스 전송 032-340-0707
• 문의 ☎ 032-340-0985

동네관리 공구대여소 대여공구

구 분	공 구	구 분	공 구
전동공구	충전그라인더, 충전드릴, 햄머드릴, 임팩드릴, 홀컷터, 직소, 컷소, 절단석	화장실 보수용	파이프렌치, 바이플라이어, 드라이버, 첼라몽키스패너, 엑셀가위
전기보수	스프링퍼, 롱로우즈, 니퍼, 뺨치	가구·목재 보수	육각렌치, 드라이버, 예초기, 망치 줄자톱, 쥐꼬리톱
기타	사다리, 작업릴선, 절단기	변기통수	광청소기, 스프링청소기

❖ 계절별 대여 공구

하절기	예초기, 우수펌프	동절기	해빙기, 열풍기
-----	-----------	-----	----------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및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거문제를 가진 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 주거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사업 진행

■ 네트워크 역할

- 주거복지 정책의 전달체계로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침수주택, 불량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언
- 그 외 주거환경 개선사항에 대한 상호의견 교류 등

7.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주거복지 교육, 워크숍 등 실시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주거복지 서비스제공자의 역량 강화 및 수준 향상에 기여

- 주거복지의 필요성, 근거, 개념, 영역 및 분야
- 주거복지 현장 실무방법(사례관리, 자원개발 등)



NETWORK



Ⅲ. 공공임대주택지원



III. 공공임대주택지원

1. 공공임대주택사업 개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

■ 임대주택 유형

- 임대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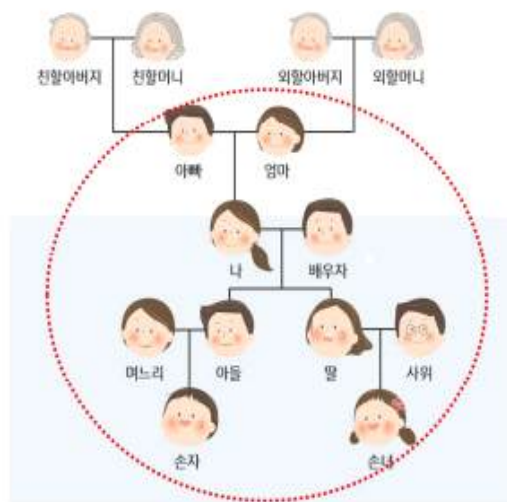
구 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정 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주택공급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급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일반수급자, 그룹홈, 주거취약계층	일반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청년

■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 공급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세대에 속한자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¹⁾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2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 3인가구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60%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3,353,884원	2,347,719원	2,012,330원	1,676,942원
2인가구	5,005,376원	3,53,763원	3,003,225원	2,502,688원
3인가구	6,718,198원	4,702,739원	4,030,919원	3,359,099원
4인가구	7,622,056원	5,335,439원	4,573,234원	3,811,028원
5인가구	8,040,492원	5,628,344원	4,824,295원	4,020,246원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의 합산기준 **25,55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비영업용 차량)
 -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

- 전 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수도권 경기주택도시공사(GH) ☎1588-0466, 인천도시공사 ☎032-260-5000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예) 2022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사용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형별 임대주택

구 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수급자 신혼부부 등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등 거주자, 신혼부부,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가구:90% - 2인가구:80%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60㎡ 이하 : 70%이하 - 85㎡ 이하 : 10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120% 이하 - 60㎡ 이하 : 100%이하 - 85㎡ 이하 : 12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	2억5,500만원	3억6,100만원	2억1,550만원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3,683만원	3,683만원	3,683만원
주택유형	아파트	아파트	-
전용면적	40㎡ 이하	85㎡ 이하 (통상 60㎡ 이하)	85㎡ 이하 (통상 60㎡ 이하)
임 대 료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보증금 (시세의 80%)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인터넷청약센터 방문신청	인터넷청약센터 방문신청
문 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1600-1004 매입임대주택(부천시역) 032-450-8253~4		

출처: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 - 주택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형별 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다자녀(미성년 3명 이상)가구,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대학생, 청년(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등 청년(만19세 ~ 39세),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 130% - 노부모부양 :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세대원청년 : 80% - 맞벌이 부부 : 120% - 그 외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2억1,550만원	3억6,100만원 - 청년 : 2억9,900만원 - 대학생 : 8,500만원	2억5,500만원	2억5,500만원
3,683만원	3,683만원 (대학생: 소유안됨)	3,683만원	3,683만원
-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85㎡ 이하 (50년 임대 50㎡ 이하)	60㎡ 이하	85㎡ 이하	85㎡ 이하 (1인가구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90%)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 보증금 1억3,0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1~2%이자
5년·10년(분양전환) 50년(영구임대주택)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20년	20년	20년
인터넷청약센터 방문신청	인터넷청약센터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
문 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1600-1004 매입임대주택(부천지역) 032-450-8253~4		

출처: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 - 주택지원)

3.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지원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 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등 거주자, 신혼부부,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 1인가구 : 120% - 2인가구 : 110%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	2억5천500만원	3억6천100만원	2억1,550만원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3,683만원	3,683만원	3,683만원
주택유형	-	-	재건축된 주택, 아파트
전용면적	4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인가구 40㎡ 이하)
임 대 료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보증금 (시세의 80%)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인터넷청약센터 방문신청	인터넷청약센터 방문신청
문 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1588-0466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의 공급계획 미정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https://housing.gg.go.kr> (주거복지 서비스 - 공공임대주택지원)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다자녀(미성년 3명 이상)가구,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 함, 6세 이하 자녀 한부 모가족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국가 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 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 거지원, 공동생활가정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 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 거지원, 공동생활가정 등 청년(만19세 ~ 39세),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 신혼부부 : 130% - 1인가구·노부모부양 :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세대원청년 : 80% - 맞벌이 부부 : 120% - 그 외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2억1,550만원	3억6,100만원 - 청년 : 2억9,900만원 - 대학생 : 8,500만원	2억5,500만원	2억5,500만원
3,683만원	3,683만원 (대학생: 소유안됨)	3,683만원	3,683만원
아파트	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85㎡ 이하	45㎡ 이하	85㎡ 이하 (1인가구 60㎡ 이하)	85㎡ 이하 (1인가구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80%)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지원금(수도권) : 1억3,000만원 · 입주자 납부 금액은 전세지원금의 - 임대보증금 2 ~ 5% - 월임대료 연1~2%이자
10년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20년	20년 (공동생활가정 10년)	20년 (청년 6년, 소년소녀가장 (만20세 이후) 3회 연장)
인터넷청약센터	인터넷청약센터	거주지 주민센터	인터넷청약센터 방문신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1588-0466

경기행복주택 031-216-7840 | 매입임대주택 031-214-8463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https://housing.gg.go.kr> (주거복지 서비스 - 공공임대주택지원)

4. 공공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나요?

A1 마이홈 콜센터 대표번호 1600-1004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콜센터 1588-0466으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휴대폰 사용자 1인당 지역(道 단위는 시·군 지역 선택)과 공급유형을 조합하여 최대 3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일 기준 1년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간 연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어플리케이션(앱)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LH" 또는 "공공임대 알림"을 검색하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도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A2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귀화한 외국인은 가능하나, F4비자나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주택은 유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3 예. 기본적으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완화 공고 및 청년주택의 경우 주택소유 세대원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택소유자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4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A4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에 대한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주거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 변동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금액도 변동됩니다.

Q5 현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인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A5 타 유형의 임대주택 및 선정은 가능합니다.(국민↔국민(x), 국민↔행복(O))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Q6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또 임대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입주 예비순서에 도래하여 계약하게 될 경우 두 임대주택 중 1채는 포기하셔야 합니다.(중복입주 불가)

- Q7** 임대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A7**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자산수준 등을 통합하여 자격검증(지자체)절차 소요기간입니다.
-
- Q8** 임대주택 신청 시, 같이 생활하지 않는 배우자(주소지 분리)의 자격조건도 검증하나요?
- A8**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하여, 신청인과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의 자격을 모두 자격조검을 검증합니다. 신청자(세대주)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
- Q9**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선정에 대한 확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9** 주택공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Q10** 입주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 지역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0** 주택공급기관 콜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경기도시주택공사 1588-0466)로 전화하셔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
- Q11** 입주예정자인데 가구원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 A11** ① 계약이전일 경우 추가된 세대원을 포함하여 다시 소득조회를 하게 되며,
② 계약이후일 경우 재계약 전 소득 조회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 Q12** 예비입주자입니다.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까요?
- A12** 알 수 없습니다. 전년도 퇴거 인원수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입주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예로, 올해 퇴거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1번 대기자라도 올해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Q13** 임대주택 월세가 부담스럽습니다.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13** 예. 보증금을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보증금 납부총액을 조절할 수 있으니 지역별 LH주거복지지사에 연락해주세요.
-
- Q14**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14** ① 건축이 완공된 주택구입의 경우 3개월 내 퇴거 사유 발생에 해당됩니다.
② 분양권 구입의 경우 분양계약서 상 가입된 입주예정일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도중 매매할 경우 3개월 내 퇴거 사유 발생에 해당됩니다.

Q15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15 차량 기준금액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그때그때 변경될 수 있으니 LH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대 내 2대 이상의 차량일 경우 차량가액이 가장 높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16 계약자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16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실종, 결혼, 이혼, 사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17 임대주택에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하나요?

A17 아닙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심사를 다시 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가 할증됩니다.

Q18 현재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나요?

A18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시에는 전액 상환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Q19 현재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하게 구한 주택이라 그런지 곰팡이도 슬고, 바닥장판도 다 낡아 헤져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19 현 주택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담당자에 전화하셔서 상담 후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지원금	중개보수
1억 이상 3억 미만	보증금 × 0.3%(한도 72만원)
5천 이상 1억 미만	보증금 × 0.4%(한도 30만원)
~ 5천 미만	보증금 × 0.5%(한도 20만원)

- 오피스텔은 전세금 × 0.4%(한도 96만원)
-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 중개보수료는 입주자 부담
- 거주기간 6개월 이내에 이주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료는 입주자 부담

Q20 현재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주택의 도배·장판 등이 너무 낡아 시공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A20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을 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체 지원기간 중 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시공 일부 지원(최대 60만원, 부가세포함)**이 가능합니다. 시공면적·범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의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IV. 주거비·주택금융 지원



IV. 주거비 · 주택금융 지원

1. 정부주도 주거비지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위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 46%, 2023년도 **47%** 이하 가구

(단위 : 원/월)

기 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23년	623,368	1,036,846	1,334,450	1,622,890	1,899,206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변동 없음)

• 임차가구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기준임차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 전액지원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지원내용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원/월)

기 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경기·인천지역 기준임대료	2022년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2023년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연4% 적용 월차임으로 환산)과 월차임을 합산
- 지급일 : 매월 20일 수급자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

실제임차료 산출의 예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의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1,000\text{만원} \times 4\% \div 12\text{월} + 10\text{만원} = 133,333\text{원}$$

(예시 2) 부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흥길동씨(3인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 생계급여 1,195,185원 → 전액지급

$$1,000\text{만원} \times 4\% \div 12\text{월} + 30\text{만원} = 433,333\text{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연령 : 주거수급 가구 중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계약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전입신고 필수)
 - 거주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행정구역(시·군)을 달리하여야 함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부모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신청
-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년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별도 입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출의 예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부천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가구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부천 1인)으로 분리지급

• 기존(3인가구 : 부모 + 자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금: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 2\text{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임차료)} - (\text{자기부담분} \times \text{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text{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임차료)} - (\text{자기부담분} \times \text{청년 가구원수 비율})$$

■ 자가가구지원[수선유지급여]

-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설치
 - ※ 장애인과 고령자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주택개량 지원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가능·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구조·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1년과 2022년 동일한 수준

- 지원금액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30% 초과 ~ 35% 이하	35% 초과 ~ 45%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급의 예

(예시)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지원(457만원 한도) +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원 한도)

2. 경기도주도 주거비지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지원 사업

■ 경기도주도 주거비지원

구 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개 요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경기도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	GH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 입주 희망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체결 후 GH가 입주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매입임대주택 계약예정인 신규예비입주자 ※ 기존입주 재계약자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 대상주택 -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전환보증금 최대 2억5천만원 이하(2인이상 3억이하) - 전용면적 60㎡이하(2인이상 85㎡이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기본임대보증금 50%이내 - 가구당 최대 250만원, 무이자 • 지원방식 - 임대보증금 중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잔금납부	• 임대기간 : 최대 6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전세보증금의 85%(최대1억원) - 연 2%(지원금×2%÷12개월)를 월임대료 형식으로 부담. 입주자는 보증금의 최소 15%부담
지원기간	매입임대주택을 거주 기간 (최대 20년)	2년 단위 계약 (최대 6년, 2회 재계약)
신청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2부)
문 의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51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https://housing.gg.go.kr>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비 및 금융지원)

■ 경기도주도 주거비지원

구 분	저소득층 전세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시 필요한 대출보증료와 대출금리 4%를 지원 경기도·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이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민 대출 후 1개월 경기도로 전입예정인 무주택 가구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p>※ 신용평가등급 1~9등급(신용불량, 신용회복 중 인자,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경과자 등 신용간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p>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신청한도 :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 연 4%
지원기간	최장 4년 지원
신청기관	거주지 주민센터
문 의	<p>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462</p> <p>경기도 콜센터 031-120</p> <p>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p>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https://housing.gg.go.kr>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비 및 금융지원)

3. 주택금융지원

구 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대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 ※ 3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 제외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7,000만원 이하 -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원 이하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000만원이내 - 순자산 기준금액 3억6천100만원 이하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수도권) - 전용면적 85㎡이하(단독세대주 60㎡이하) - 5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최대2.5억원 이내 - 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1억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15~연 3% •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수도권) - 전용면적 85㎡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저금리(1.8~2.4%)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수도권 1억2,000만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일반신혼부부 3억, 2자녀 이상 4억 •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은행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대출조건 확인 및 대출신청 대출기본정보 확인 및 주택도시보증기금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방문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은행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자산심사 및 추가심사 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산 정보 수집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에 소득·담보물심사
	서비스 실시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대출 실행
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출처: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 - 주택지원 - 자금지원)

3. 주택금융지원

구 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상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주택(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연금 매달 지급, 종신거주 보장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농특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 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비스 신청</p> <p>은행 방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p> <p>↓</p> <p>대상자 확인</p> <p>대상자 확인(대출심사 및 대출승인)</p> <p>↓</p> <p>서비스 보장</p> <p>신청은행에서 대출금 지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비스 신청</p> <p>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p> <p>↓</p> <p>심사, 보증약정(담보설정) 및 보증서 발급</p> <p>가입자 요건심사(현장방문,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약정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서 발급</p> <p>↓</p> <p>서비스 보장</p> <p>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등</p> </div>
문 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출처: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 - 주택지원 - 자금지원)



V. 부천시 주거복지사업



V. 부천시 주거복지사업

1.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39
	경기도 햇살하우징	41
2.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안전홈 케어	41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안전하우징 서비스	42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43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44
3. 그린뉴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시행	45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46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47
	그린리모델링	48
4. 소규모 집수리 무상 서비스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49
	부천시[심곡동·오정동·성곡동] 경기마을행복관리소	50
5. 봉사단체·민간 집수리	사랑앓 집수리	51
	경기도 G-하우징	52
6. 공동주택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3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소규모주택 옥내배관의 개량지원	54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55
	대규모주택 옥내배관의 개량지원	56
7. 에너지 등 지원	에너지바우처	57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58

1.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구 분	내 용															
개 요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내용	벽걸이 에어컨 설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시기	3월 ~(선착순)															
지원내용	벽걸이 에어컨 119대															
선정기준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 2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 : 1,2순위 외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 차상위계층															
사업방식	주민센터(복지과) 신청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서비스 신청</th> <th>대상자 사전조사</th> <th>지원내역 협의 및 서류제출</th> <th>대상자 확정 서비스지원</th> <th>지원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 신청</td> <td>현장방문 에너지효율진단</td> <td>주택에 적합한 지원내역 협의 지원신청서·집주인 동의서</td> <td>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확정 시공 및 물품지원</td> <td>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td> </tr> <tr> <td>주민센터</td> <td>한국에너지재단</td> <td>신청자·한국에너지재단</td> <td>한국에너지재단</td> <td>한국에너지재단</td> </tr> </tbody> </table>	서비스 신청	대상자 사전조사	지원내역 협의 및 서류제출	대상자 확정 서비스지원	지원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	현장방문 에너지효율진단	주택에 적합한 지원내역 협의 지원신청서·집주인 동의서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확정 시공 및 물품지원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주민센터	한국에너지재단	신청자·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서비스 신청	대상자 사전조사	지원내역 협의 및 서류제출	대상자 확정 서비스지원	지원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	현장방문 에너지효율진단	주택에 적합한 지원내역 협의 지원신청서·집주인 동의서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확정 시공 및 물품지원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주민센터	한국에너지재단	신청자·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에너지팀 ☎ 032-625-2774															
문의	생활경제과 에너지팀 ☎ 032-625-2774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9															
근거법령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4호)															

경기도 햇살하우징																
구 분	내 용															
개 요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															
지원내용	창호, 단열, 보일러, 전등기구 등 주택 내·외부시설 및 도배, 장판 등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및 시장·군수가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임대인 동의 필요)															
대상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시기	매년 상반기															
지원금액	가구당 평균 500만원															
지원기간	당해년도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사업마감)시까지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 지원 불가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최근 5년 이내 햇살하우징사업 수혜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사업방식	주민센터(복지과) 신청하여 사전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체 진행															
신청절차	<table border="1"> <tr> <td>신청서 접수</td> <td>신청자격 확인</td> <td>대상자 선정</td> <td>임대차 계약 체결</td> <td>집수리 지원</td> </tr> <tr> <td>서비스 신청</td> <td>신청자격 검토·추천</td> <td>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td> <td>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td> <td>주택 개·보수</td> </tr> <tr> <td>주민센터</td> <td>부천시</td> <td>경기도</td> <td>경기주택도시공사 · 에너지효율공단</td> <td>경기주택도시공사</td> </tr> </table>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집수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신청자격 검토·추천	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	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	주택 개·보수	주민센터	부천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에너지효율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집수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신청자격 검토·추천	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	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	주택 개·보수												
주민센터	부천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에너지효율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 032-625-3584															
문 의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 032-625-3584 경기주택도시공사GH ☎ 031-220-3097															
근거법령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4호)															

2.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안전홈 케어																
구 분	내 용															
개 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홈케어 - 가스타이머, 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단차설치, 문턱제거 • 청결홈케어 - 도배장판, 소독, 곰팡이제거, 바퀴트랩, 에어캡, 문풍지 • 건강홈케어 - 미니가든, 실내자전거 • 리빙홈케어 - 등교체, 변기커버, 디지털도어락, 수전 등 															
지원대상	낙상사고 등 사고위험이 있는 통합돌봄대상자 300명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지원시기	2023. 1월 ~ 12월															
지원금액	가구당 30만원(30만원 초과 시공 시 지역케어회의 심의결정 후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연중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제외	유사사업 주택 개·보수 수혜자															
선정기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3개 영역평가 기준 적합자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洞) 통합돌봄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초기상담,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의뢰, 모니터링 및 행복e음 입력·관리 • 소사지역자활센터 :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사후관리(시공 후 6개월) 															
진행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발굴</th> <th>서비스결정</th> <th>서비스 1단계</th> <th>서비스 2단계</th> <th>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필요도평가</td> <td>지역케어회의</td> <td>안전주거 컨설팅</td> <td>시공</td> <td>만족도 조사 AS제공</td> </tr> <tr> <td>주민센터</td> <td>주민센터</td> <td>운영기관</td> <td>운영기관</td> <td>운영기관</td> </tr> </tbody> </table>	대상자 발굴	서비스결정	서비스 1단계	서비스 2단계	사후관리	필요도평가	지역케어회의	안전주거 컨설팅	시공	만족도 조사 AS제공	주민센터	주민센터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대상자 발굴	서비스결정	서비스 1단계	서비스 2단계	사후관리												
필요도평가	지역케어회의	안전주거 컨설팅	시공	만족도 조사 AS제공												
주민센터	주민센터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지원팀 ☎ 032-625-9022															
문 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통합돌봄팀 ☎ 032-320-3000															
근거법령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안전하우징 서비스																
구 분	내 용															
개 요	노화에 따른 생활기능 장애를 배려하기 위해 안전바 설치 등 고령친화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핸드레일, 안전바(변기·세면대 등), 가스안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 (생활수리) 조명개선(LED등 교체, 리모컨스위치), 방문고리, 방충망 등 • (기타) 하수도 막힘, 수도꼭지·스위치 고장, 변기커버 교체, 위생소독 등 															
지원대상	• 75세 이상 1인가구															
대상주택	단독주택, 연립, 빌라, 아파트															
지원시기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지원금액	1가구당 20만원 ※2021년 예산액 기준 65,000천원															
지원기간	연중															
지원제외	아파트,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 수혜자															
선정기준	연령, 거주기간 등 배점표 기준															
사업방식	서비스 신청기간에 동 복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 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발굴</th> <th>대상자 선정</th> <th>서비스 의뢰 및 제공</th> <th>모니터링 사후관리</th> <th>결과보고</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td> <td>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 (배점표 기준)</td> <td>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td> <td>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td> <td>서비스 만족도 겨로가보고</td> </tr> <tr> <td>동 복지과</td> <td>노인복지과</td> <td>자활센터</td> <td>자활센터</td> <td>노인복지과</td> </tr> </tbody> </table>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의뢰 및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보고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 (배점표 기준)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	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	서비스 만족도 겨로가보고	동 복지과	노인복지과	자활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과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의뢰 및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보고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 (배점표 기준)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	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	서비스 만족도 겨로가보고												
동 복지과	노인복지과	자활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과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 032-625-2871															
문 의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 032-625-2871															
근거법령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구 분	내 용															
개 요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지원내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장애인 손잡이, 경사로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시기	매년 상반기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기간	당해년도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사업마감)시까지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최근 7년 이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차상위 ⑤중위소득 70%이하 2차 : 장애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65세 이상 고령자 															
사업방식	주민센터(복지과) 신청하여 사전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체 진행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청서 접수</th> <th>신청자격 확인</th> <th>대상자 선정</th> <th>임대차 계약 체결</th> <th>집수리 지원</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 신청</td> <td>신청자격 검토·추천</td> <td>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td> <td>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td> <td>주택 개·보수</td> </tr> <tr> <td>주민센터</td> <td>부천시</td> <td>경기도</td> <td>경기주택도시공사 · 에너지효율공단</td> <td>경기주택도시공사</td> </tr> </tbody> </table>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집수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신청자격 검토·추천	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	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	주택 개·보수	주민센터	부천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에너지효율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집수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신청자격 검토·추천	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	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	주택 개·보수												
주민센터	부천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 에너지효율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 032-625-3584															
문 의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 032-625-3584 경기주택도시공사GH ☎ 031-220-3095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 분	내 용															
개 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용	화장실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싱크대 높이조절, 보조손잡이 설치, 리모콘도어락, 파손된 도배·장판 등 저소득장애인 주거용 주택 내 생활 불편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	[5월]대상자 모집 ⇨ [6월]대상자 결정 및 시공업체 선정 ⇨ [7~10월] 공사추진															
지원금액	가구당 3,000천원 이내															
지원기간	공사 완료 후 1년간 A/S 가능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간,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 ※(예외) 예산잔액 발생 시 실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가구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예: 수선유지급여 등) ※ 2021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후원금 등으로 유사서비스를 지원 받은 가구 															
선정기준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선발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 결정 ※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선발 기준표(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 정도 ②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중복장애인 ④ 고령 장애인 ⑤ 저소득 장애인 유무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 사회적 기업 입찰을 통한 공사발주 및 감독, 사후 1년 무상 서비스 진행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신청</th> <th>대상자 선정</th> <th>서비스 의뢰 및 제공</th> <th>모니터링 사후관리</th> <th>결과보고</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td> <td>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td> <td>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td> <td>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td> <td>서비스 만족도 결과보고</td> </tr> <tr> <td>주민센터</td> <td>장애인복지과</td> <td>자활센터</td> <td>자활센터</td> <td>장애인복지과</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의뢰 및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보고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	서비스 만족도 결과보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	자활센터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과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의뢰 및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보고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	서비스 만족도 결과보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	자활센터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2-625-2905															
문 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2-625-2905															

3. 그린뉴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시행

구 분	내 용												
개 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지원내용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부천시 거주 시민 ※ 2020년 4월 이전 설치 보일러												
대상주택	기존보일러 연식이 10년 이상인 부천시 관내 주택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												
지원시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지원금액	저녹스(NOX)보일러 1대당 10만원(일반), 60만원(저소득층)												
지원기간	매년 1월경(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선정기준	부천시 관내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 설치한 자 ※ 2020년 4월 이전 설치 보일러												
사업방식	부천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설치 및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후지급 방식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청·절차</th> <th>서류제출</th> <th>적정여부 심사</th> <th>보조금 지급</th> </tr> </thead> <tbody> <tr> <td>저녹스 보일러 구매계약·설치</td> <td>보조금신청서, 구비서류 제출</td> <td>보조금신청서, 구비서류 적정여부 확인</td> <td>보조금 지급 확정 및 지급</td> </tr> <tr> <td>신청자 > 공급자(대리점)</td> <td>공급자/구매자 > 환경사업단</td> <td>환경사업단</td> <td>환경사업단 > 공급자/구매자</td> </tr> </tbody> </table>	신청·절차	서류제출	적정여부 심사	보조금 지급	저녹스 보일러 구매계약·설치	보조금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보조금신청서, 구비서류 적정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확정 및 지급	신청자 > 공급자(대리점)	공급자/구매자 > 환경사업단	환경사업단	환경사업단 > 공급자/구매자
신청·절차	서류제출	적정여부 심사	보조금 지급										
저녹스 보일러 구매계약·설치	보조금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보조금신청서, 구비서류 적정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확정 및 지급										
신청자 > 공급자(대리점)	공급자/구매자 > 환경사업단	환경사업단	환경사업단 > 공급자/구매자										
담당부서	환경사업단 미세먼지대책과 ☎ 032-625-3159												
문 의	환경사업단 미세먼지대책과 ☎ 032-625-3159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apt.bucheon.go.kr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6조												
기 타	<p>☎ 저녹스 보일러 제작사 연락처</p> <table border="1"> <tbody> <tr> <td>(주)경동나비엔 1588-1144</td> <td>(주)귀뚜라미 1588-9000</td> </tr> <tr> <td>(주)알토엔대우 1588-7339</td> <td>린나이코리아(주) 1544-3651</td> </tr> <tr> <td>대성셀틱에너지(주) 1588-8577</td> <td>롯데알미늄(주)공사사업본부 032-870-7100</td> </tr> </tbody> </table>	(주)경동나비엔 1588-1144	(주)귀뚜라미 1588-9000	(주)알토엔대우 1588-7339	린나이코리아(주) 1544-3651	대성셀틱에너지(주) 1588-8577	롯데알미늄(주)공사사업본부 032-870-7100						
(주)경동나비엔 1588-1144	(주)귀뚜라미 1588-9000												
(주)알토엔대우 1588-7339	린나이코리아(주) 1544-3651												
대성셀틱에너지(주) 1588-8577	롯데알미늄(주)공사사업본부 032-870-7100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구 분	내 용															
개 요	주택에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지원내용	미니태양광 설치 단가의 80% 지원(자부담 20%)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로서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 ※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 제출															
대상주택	부천시 소재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소유자 동의 시 옥상설치 가능															
지원시기	매년															
지원금액	설치 단가의 80% 지원(자부담 20%)															
지원기간	5월 ~ 11월(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제외	보조금 지급 기 수혜자															
선정기준	※ 선착순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선착순) 설치완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신청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사업공고</th> <th style="width: 20%;">사업계약체결</th> <th style="width: 20%;">지원사업 참여신청</th> <th style="width: 20%;">태양광설치·보조금 신청</th> <th style="width: 20%;">보조금 지급</th> </tr> </thead> <tbody> <tr> <td>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td> <td>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택·계약 체결</td> <td>참여신청서, 구비서류 제출</td> <td>시, 승인 후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td> <td>참여기업 보조금 지급</td> </tr> <tr> <td>생활경제과</td> <td>신청자</td> <td>신청자·참여기업</td> <td>신청자·참여기업</td> <td>생활경제과</td> </tr> </tbody> </table>	사업공고	사업계약체결	지원사업 참여신청	태양광설치·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택·계약 체결	참여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시, 승인 후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	참여기업 보조금 지급	생활경제과	신청자	신청자·참여기업	신청자·참여기업	생활경제과
사업공고	사업계약체결	지원사업 참여신청	태양광설치·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택·계약 체결	참여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시, 승인 후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	참여기업 보조금 지급												
생활경제과	신청자	신청자·참여기업	신청자·참여기업	생활경제과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에너지팀 ☎ 032-625-2771															
문 의	생활경제과 에너지팀 ☎ 032-625-2771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apt.bucheon.go.kr															
근거법령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제22조															
기 타	<p>☉ 참여기업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50%;">(주)썬에너지 02-356-8188</td> <td style="width: 50%;">(주)무한에너지 031-548-0536</td> </tr> <tr> <td>(주)파랑이엔지 1833-2771</td> <td>솔라테라스(주) 070-8873-0370</td> </tr> <tr> <td>(주)태현디엔에스 1668-2322</td> <td>(주)마이크로발전소 070-4900-4686</td> </tr> <tr> <td>(주)경동솔라에너지 1666-8066</td> <td></td> </tr> </tbody> </table>	(주)썬에너지 02-356-8188	(주)무한에너지 031-548-0536	(주)파랑이엔지 1833-2771	솔라테라스(주) 070-8873-0370	(주)태현디엔에스 1668-2322	(주)마이크로발전소 070-4900-4686	(주)경동솔라에너지 1666-8066								
(주)썬에너지 02-356-8188	(주)무한에너지 031-548-0536															
(주)파랑이엔지 1833-2771	솔라테라스(주) 070-8873-0370															
(주)태현디엔에스 1668-2322	(주)마이크로발전소 070-4900-4686															
(주)경동솔라에너지 1666-8066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개 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지원내용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7개동) 및 지붕개량(2개동)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대상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								
지원시기	매년 3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지원금액	42,816천원(9동)								
지원기간	매년 3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선정기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임차인 등) 중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 ④ 일반가구								
신청·접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가 증빙자료 첨부하여 환경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사업진행								
지원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 신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 선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현장조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 실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 주민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 선정 → 환경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탁사업자 현장조사 (면적 등) → 위탁사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 위탁사업자</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사업 실시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 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 환경과	위탁사업자 현장조사 (면적 등) → 위탁사업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 위탁사업자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사업 실시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 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 환경과	위탁사업자 현장조사 (면적 등) → 위탁사업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 위탁사업자						
담당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 032-625-3166								
문 의	환경과 총량허가팀 ☎ 032-625-3166								
근거법령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그린리모델링							
구 분	내 용						
개 요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의 이자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 						
대상주택	비주거, 주거(단독·공동주택)						
지원시기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구 분	대상금액	거치기간	총상환기간 (분할상환)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50억원	3년 이내	120개월	신한, 제주, 기업, 국민, 농협	은행약정이자를 지원이자율(3%)	
	주거	공동	최대 2천만원	-	60개월	우리, 국민, 농협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없음
					36개월		
					12,24,36개월		
	단독	최대 5천만원	-	60개월	우리, 국민, 농협	은행약정이자를 지원이자율(3%)	
36개월				신한카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 다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비주거는 거치 3년 시 7년 분할상환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지원기준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3%의 이자지원을 적용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건축주의 신청동의 필수) 2단계 : 센터, 사업 확인 심사 후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3단계 : 사업확인서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가 대출여부 확인 후 착공 4단계 : 건축주의 공사완료 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5단계 :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6단계 :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담당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1600-100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1600-1004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홈페이지 greenremodeling.or.kr						
기 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4. 소규모 집수리 무상 서비스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구 분	내 용																						
개 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관리의 개념이 도입된 부천도시공사의 노후·불량주택 통합관리브랜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품 교체·수리(LED전등교체, 방충망 교체, 수도꼭지·수전 교체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전등기구</td> <td>전등(LED전등 30W, 50W), 센서등, 직부등</td> </tr> <tr> <td>전기배선</td> <td>전기스위치·콘센트·누전차단기교체, 환풍기 교체</td> </tr> <tr> <td>안전시설</td> <td>전선 물드마감처리, 화재감지기 설치·교체</td> </tr> <tr> <td>수도·수전</td> <td>수도꼭지, 수전, 고무패킹</td> </tr> <tr> <td>문·문틀</td> <td>도어스토퍼(말발굽), 경첩, 손잡이(도어락, 실린더)교체</td> </tr> <tr> <td>창·창틀</td> <td>방충망, 경첩, 잠금장치</td> </tr> <tr> <td>화장실 욕실</td> <td>물마개(팝업), 트랩, 역류방지트랩, 혼합수전, 고압호수, 앵글밸브, 줄눈, 타일 탈락부분 보수, 양변기 메지(백시멘트), 양변기 부속품 교체</td> </tr> <tr> <td>다용도실</td> <td>크랙부분 미장보수, 곰팡이제거</td> </tr> <tr> <td>기 타</td> <td>실리콘마감처리, 벽 타공</td> </tr> <tr> <td>특화사업</td> <td>(하절기)방충망, 해충방제방역 (동절기)에어캡, 문풍지, 풍지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수리 지원을 위한 생활공구 무상 대여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전등기구	전등(LED전등 30W, 50W), 센서등, 직부등	전기배선	전기스위치·콘센트·누전차단기교체, 환풍기 교체	안전시설	전선 물드마감처리, 화재감지기 설치·교체	수도·수전	수도꼭지, 수전, 고무패킹	문·문틀	도어스토퍼(말발굽), 경첩, 손잡이(도어락, 실린더)교체	창·창틀	방충망, 경첩, 잠금장치	화장실 욕실	물마개(팝업), 트랩, 역류방지트랩, 혼합수전, 고압호수, 앵글밸브, 줄눈, 타일 탈락부분 보수, 양변기 메지(백시멘트), 양변기 부속품 교체	다용도실	크랙부분 미장보수, 곰팡이제거	기 타	실리콘마감처리, 벽 타공	특화사업	(하절기)방충망, 해충방제방역 (동절기)에어캡, 문풍지, 풍지판
구 분	서비스 내용																						
전등기구	전등(LED전등 30W, 50W), 센서등, 직부등																						
전기배선	전기스위치·콘센트·누전차단기교체, 환풍기 교체																						
안전시설	전선 물드마감처리, 화재감지기 설치·교체																						
수도·수전	수도꼭지, 수전, 고무패킹																						
문·문틀	도어스토퍼(말발굽), 경첩, 손잡이(도어락, 실린더)교체																						
창·창틀	방충망, 경첩, 잠금장치																						
화장실 욕실	물마개(팝업), 트랩, 역류방지트랩, 혼합수전, 고압호수, 앵글밸브, 줄눈, 타일 탈락부분 보수, 양변기 메지(백시멘트), 양변기 부속품 교체																						
다용도실	크랙부분 미장보수, 곰팡이제거																						
기 타	실리콘마감처리, 벽 타공																						
특화사업	(하절기)방충망, 해충방제방역 (동절기)에어캡, 문풍지, 풍지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곡동(여월동, 작동, 고강본동, 고강1동), 뉴타운지구 해제 중 8개 구역 실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동(춘의1-1구역, 4~6통), 대산동(8~10통, 26~27통), 소사본동(3~4통), 성곡동(은행단지, 23~25통), 오정동(안동네) 복지기관 등 추천 가구 ※ 추천 가구에 한하여 관내 전지역 																						
대상주택	5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빌라·연립주택																						
지원시기	연중																						
지원금액	재료비 기준 가구당 30만원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주기 : 2년 지원횟수 : 5회 ※ 서비스 제공이 재료비 기준 30만원 초과 시 횟수와 상관없이 종료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거나, 부속품의 신규설치 및 부속품 원기능 유지 시 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적발 시, 재료비 환수 및 동네관리소 이용 제한 																						
신청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대상자 신청</th> <th style="width: 25%;">대상자 심사·선정</th> <th style="width: 25%;">서비스 실시</th> <th style="width: 25%;">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th> </tr> </thead> <tbody> <tr> <td>전화 또는 홈페이지</td> <td>거주지·서비스 이력 확인</td> <td>소규모 집수리 지원</td> <td>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td> </tr> <tr> <td>동네관리소</td> <td>동네관리소</td> <td>동네관리소</td> <td>동네관리소</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대상자 심사·선정	서비스 실시	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	전화 또는 홈페이지	거주지·서비스 이력 확인	소규모 집수리 지원	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대상자 신청	대상자 심사·선정	서비스 실시	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																				
전화 또는 홈페이지	거주지·서비스 이력 확인	소규모 집수리 지원	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담당부서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 032-340-0985																						
문 의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 032-340-0985																						

부천시[심곡동·오정동·성곡동] 경기마을행복관리소

구 분	내 용															
개 요	원도심 주거취약지역에 지역생활 편의제공 및 생활 안전예방, 지역 밀착형 특색서비스 발굴 및 운영(취약계층 이불세탁 지원, 정서 식물 나눔, 생활 해충 방역도움 등),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지원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민 생활편의 제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등하교·교통안전 지도 · 지역순찰 및 기타위험관리 · 생활공구 대여(63종 기초 공구) · 반딧불이(태양광LED등) 설치·관리 ·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하계방역 ·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취약계층 돌봄·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간단집수리 · 홀몸노인 돌봄, 취약계층 도움(기관연계) ·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전 점검 · 홈케어 서비스(취약계층 생활 해충 방역 도움) · 환절기 건강지킴이 행복빨래방(이불세탁 지원) · 따듯한 겨울나기(동절기 생활환경 정비 도움) · 한뼘꽃밭 조성·나눔(정서식물 지원, 돌봄 병행) </td> </tr> </table>	주민 생활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등하교·교통안전 지도 · 지역순찰 및 기타위험관리 · 생활공구 대여(63종 기초 공구) · 반딧불이(태양광LED등) 설치·관리 ·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하계방역 ·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취약계층 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간단집수리 · 홀몸노인 돌봄, 취약계층 도움(기관연계) ·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전 점검 · 홈케어 서비스(취약계층 생활 해충 방역 도움) · 환절기 건강지킴이 행복빨래방(이불세탁 지원) · 따듯한 겨울나기(동절기 생활환경 정비 도움) · 한뼘꽃밭 조성·나눔(정서식물 지원, 돌봄 병행) 											
주민 생활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등하교·교통안전 지도 · 지역순찰 및 기타위험관리 · 생활공구 대여(63종 기초 공구) · 반딧불이(태양광LED등) 설치·관리 ·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하계방역 ·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취약계층 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간단집수리 · 홀몸노인 돌봄, 취약계층 도움(기관연계) ·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전 점검 · 홈케어 서비스(취약계층 생활 해충 방역 도움) · 환절기 건강지킴이 행복빨래방(이불세탁 지원) · 따듯한 겨울나기(동절기 생활환경 정비 도움) · 한뼘꽃밭 조성·나눔(정서식물 지원, 돌봄 병행) 															
지원권역	심곡동(심곡1, 심곡3, 원미2, 소사), 오정동(원종2, 오정 일부) 성곡동(고강동, 고강본동)															
지원대상	지원권역 고령1인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취약계층 및 일반 주민															
운영시간	평일(주5일, 토·공휴일 제외) 08:00 ~ 22:00															
이용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서비스 신청</td>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현장실사</td>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서비스 제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전화, 방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서비스 내용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장방문 확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서비스 제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행복마을관리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행복마을관리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행복마을관리소</td> </tr> </table>	서비스 신청	➔	현장실사	➔	서비스 제공	전화, 방문		서비스 내용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장방문 확인		서비스 제공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관리소
서비스 신청	➔	현장실사	➔	서비스 제공												
전화, 방문		서비스 내용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장방문 확인		서비스 제공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관리소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 ☎ 032-625-4342															
문 의	심곡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 032-625-7912 오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 032-625-7911 성곡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2022년 2월 개소 예정)															

5. 봉사단체·민간 집수리

사랑愛 집수리																
구 분	내 용															
개 요	자원봉사자 및 기업 등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내 집수리 전문봉사단의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내용	도배·장판시공, 전기설비개보수 등 전문 봉사단 발굴 및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가정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															
지원대상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계층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추천가구															
대상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우선, 비영리 복지시설															
지원시기	연중															
지원금액	가구당 220천원 이내 ※ 하절기 특별 집수리 지원[봉사단체 자체기금]															
지원기간	연중															
지원제외	주택 개보수 수혜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답사를 통해 신청인 주거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한 순위 내 경합 있는 경우에는 보수실태유형(긴급보수 또는 일반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 소득 및 소외계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외계층 ② 기초 수급자 ③ 고령자 ④ 일반 저소득층 - 2차 : 보수실태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보수 필요 주택 ② 그 외 일반보수 필요 주택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총괄 대상가구 실태조사, 봉사단체 선정 및 공사추진 등 제반사항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신청</th> <th>대상자·봉사단체 선정</th> <th>현장실사</th> <th>서비스 제공</th> <th>모니터링 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td> <td>대상자·봉사단체 선정</td> <td>봉사단체와 실사 서비스 항목 확정</td> <td>맞춤형 집수리 시행</td> <td>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td> </tr> <tr> <td>주민센터·복지관</td> <td>자원봉사센터</td> <td>자원봉사센터·봉사단체</td> <td>봉사단체</td> <td>자원봉사센터·봉사단체</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대상자·봉사단체 선정	현장실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봉사단체 선정	봉사단체와 실사 서비스 항목 확정	맞춤형 집수리 시행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주민센터·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봉사단체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봉사단체
대상자 신청	대상자·봉사단체 선정	현장실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봉사단체 선정	봉사단체와 실사 서비스 항목 확정	맞춤형 집수리 시행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주민센터·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봉사단체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봉사단체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민간협력팀 ☎ 032-625-6503															
문 의	자치분권과 민간협력팀 ☎ 032-625-6503															

경기도 G-하우징																
구 분	내 용															
개 요	민간자원 및 재능기부를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지원내용	주택 내·외부 중·대 개보수(재능기부 업체에 따라 지원 항목 상이)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및 시장 추천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 등															
대상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시기	매년 초 3월 ~ 5월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기간	당해년도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사업마감)시까지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 지원 불가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G-하우징사업 및 최근 5년 이내 주택개보수 수혜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소득기준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차상위 ⑤중위소득 70%이하 • 2차 : 보수실태유형 ①긴급보수가 필요한 주택 ②그 외 일반보수가 필요한 주택 															
사업방식	주민센터(복지과) 신청하여 사전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체 진행															
신청절차	<table border="1"> <tr> <td>신청서 접수</td> <td>신청자격 확인</td> <td>대상자 선정</td> <td>임대차 계약 체결</td> <td>집수리 지원</td> </tr> <tr> <td>서비스 신청</td> <td>신청자격 검토·추천</td> <td>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td> <td>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td> <td>주택 개·보수</td> </tr> <tr> <td>주민센터</td> <td>부천시</td> <td>경기도</td> <td>부천시·참여업체</td> <td>참여업체</td> </tr> </table>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집수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신청자격 검토·추천	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	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	주택 개·보수	주민센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참여업체	참여업체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집수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신청자격 검토·추천	사업총괄 및 최종대상자 확정	현장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	주택 개·보수												
주민센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참여업체	참여업체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 032-625-3584															
문 의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 032-625-3584															

6. 공동주택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구 분	내 용								
개 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지원(옥상방수 등)								
지원내용	옥상방수 등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일부(최대 공사금액 80%, 2000만원) 지급								
지원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등 30세대 미만)								
대상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등 30세대 미만)								
지원시기	매년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 사업비에 따라 80% ~ 70% 적용)								
지원기간	2023. 1. 2. ~ 2024. 2. 3. 18:00까지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 								
선정기준	배점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배점이 높은 공동주택(배점기준은 홈페이지 게시) 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단지 및 보조금액 결정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한 예산 집행 및 대상자 모집 • 사회적 기업 입찰을 통한 공사발주 및 감독, 사후 1년 무상 서비스 진행 								
신청절차	<table border="1"> <tr> <td>대상자 신청</td> <td>대상자 선정</td> <td>사업추진</td> <td>보조금 지급</td> </tr> <tr> <td>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접수 (부천시)</td> <td>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td> <td>착공서류 제출 > 사업추진·완료 > 보조금 교부신청</td> <td>현장확 후 보조금 교부</td> </tr> </table>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접수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착공서류 제출 > 사업추진·완료 > 보조금 교부신청	현장확 후 보조금 교부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접수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착공서류 제출 > 사업추진·완료 > 보조금 교부신청	현장확 후 보조금 교부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 ☎ 032-625-4156								
문 의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 ☎ 032-625-4156								

소규모주택 옥내배관의 개량지원																
구분	내용															
개요	옥내배관 공사비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수도물 공급															
지원내용	소규모주택 옥내배관 개량 공사비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															
대상주택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1994년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아연강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지원시기	연중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면적별 차등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대(전용)면적</th> <th>60㎡ 이하</th> <th>85㎡ 이하</th> <th>130㎡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총 공사비 대비 지원율</td> <td>80%</td> <td>50%</td> <td>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전액 지원 •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2022년 기준) 개인배관 : 1,800,000원 이하 / 공용배관 : 세대당 600,000원 이하 	세대(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130㎡ 이하	총 공사비 대비 지원율	80%	50%	30%							
세대(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130㎡ 이하													
총 공사비 대비 지원율	80%	50%	30%													
지원기간	2023년 1월~ 예산 마감까지															
지원제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배관은 대상 제외															
선정기준	부천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내 소규모주택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지원금 기준 이내에서 전액 지원															
사업방식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노후 옥내배관 및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면적에 따라 옥내배관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최대지원금 기준 이내에서 전액 지원)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신청</th> <th>현장조사</th> <th>지원·우선순위 결정</th> <th>공사시행 지원금 신청</th> <th>공사완료 확인·지원금 지급</th> </tr> </thead> <tbody> <tr> <td>전화, 서면 등 (주택소유자 70% 이상 동의)</td> <td>현장조사 및 사업안내</td> <td>면적130㎡ 이하 세대에 지원 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td> <td>공사비 지원 승인 및 통보 > 공사 추진</td> <td>공사완료 확인·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td> </tr> <tr> <td>수도시설과</td> <td>수도시설과</td> <td>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td> <td>지원단지개량업체</td> <td>수도시설과</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현장조사	지원·우선순위 결정	공사시행 지원금 신청	공사완료 확인·지원금 지급	전화, 서면 등 (주택소유자 70% 이상 동의)	현장조사 및 사업안내	면적130㎡ 이하 세대에 지원 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공사비 지원 승인 및 통보 > 공사 추진	공사완료 확인·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지원단지개량업체	수도시설과
대상자 신청	현장조사	지원·우선순위 결정	공사시행 지원금 신청	공사완료 확인·지원금 지급												
전화, 서면 등 (주택소유자 70% 이상 동의)	현장조사 및 사업안내	면적130㎡ 이하 세대에 지원 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공사비 지원 승인 및 통보 > 공사 추진	공사완료 확인·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지원단지개량업체	수도시설과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 032-625-3295															
문의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 032-625-3291, 3295															
기타	소규모주택 : 300세대 미만 (엘리베이터 미설치, 지역난방 미공급)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거법령	「수도법」 제21조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구 분	내 용										
개 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수, 옥상방수, CCTV 설치 및 보수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지원시기	매년 1월 ~ 2월초										
지원금액	<p>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 80%) 미만, 세대수별 상한별 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세대)</th> <th>300 미만</th> <th>300~499</th> <th>500~999</th> <th>1,00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지원한도액</td> <td>2,500만원</td> <td>3,000만원</td> <td>4,000만원</td> <td>5,000만원</td> </tr> </tbody> </table> <p>※ 2021년 예산액 기준 1,400,000,000원</p>	구분(세대)	300 미만	300~499	500~999	1,000 이상	지원한도액	2,5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구분(세대)	300 미만	300~499	500~999	1,000 이상							
지원한도액	2,5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지원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선정기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업방식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신청서 제출, 심의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신청절차	<p>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신청서 제출</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신청</th> <th>대상자 선정</th> <th>사업추진</th> <th>보조금 지급</th> </tr> </thead> <tbody> <tr> <td>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접수 (부천시)</td> <td>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td> <td>착공서류 제출 > 사업추진·완료 > 보조금 교부신청</td> <td>현장확 후 보조금 교부</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접수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착공서류 제출 > 사업추진·완료 > 보조금 교부신청	현장확 후 보조금 교부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접수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착공서류 제출 > 사업추진·완료 > 보조금 교부신청	현장확 후 보조금 교부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032-625-3586										
문 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032-625-3586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apt.bucheon.go.kr										
기 타	<p>*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p> <p>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p>										

대규모주택 옥내배관의 개량지원																
구분	내용															
개요	옥내배관 공사비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수도물 공급															
지원내용	대규모주택 공용 옥내배관 개량 공사비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관내 대규모 아파트															
대상주택	관내 대규모 아파트(1994년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아연강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원시기	지속															
지원금액	공용배관 : 2023년 기준 세대당 455,000원 이하(주택면적별 차등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세대(전용)면적</th> <th>60㎡ 미만</th> <th>60㎡ ~ 85㎡</th> <th>85㎡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노후관</td> <td>교체</td> <td>55%</td> <td>50%</td> <td>45%</td> </tr> <tr> <td>교체공사지원비율</td> <td>갱생</td> <td>65%</td> <td>60%</td> <td>55%</td> </tr> </tbody> </table>	세대(전용)면적		60㎡ 미만	60㎡ ~ 85㎡	85㎡ 초과	노후관	교체	55%	50%	45%	교체공사지원비율	갱생	65%	60%	55%
세대(전용)면적		60㎡ 미만	60㎡ ~ 85㎡	85㎡ 초과												
노후관	교체	55%	50%	45%												
교체공사지원비율	갱생	65%	60%	55%												
지원기간	2023년 1월~ 예산 마감까지															
지원제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배관은 대상 제외															
선정기준	부천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내 대규모 아파트															
사업방식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노후 옥내배관 및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옥내배관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공용배관만 지원)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신청</th> <th>대상자 선정</th> <th>서비스 의뢰 및 제공</th> <th>모니터링 사후관리</th> <th>결과보고</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td> <td>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td> <td>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td> <td>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td> <td>서비스 만족도 결과보고</td> </tr> <tr> <td>주민센터</td> <td>장애인복지과</td> <td>자활센터</td> <td>자활센터</td> <td>장애인복지과</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의뢰 및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보고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	서비스 만족도 결과보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	자활센터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과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의뢰 및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보고												
대상자 및 집주인 동의	대상자·서비스 항목 확정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서비스 결과 제철 및 사후관리(A/S)	서비스 만족도 결과보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	자활센터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과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 032-625-3291															
문의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 032-625-3291, 3295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apt.bucheon.go.kr															
기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아파트 또는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근거법령	「수도법」 제21조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7. 에너지 등 지원

에너지바우처																					
구 분	내 용																				
개 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형태)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7~8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시기	매년 5월 ~ 연말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2021년 기준) 매년 지급금액이 변동되며,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 이상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여 름</td> <td>29,600원</td> <td>44,200원</td> <td>65,500원</td> <td>93,500원</td> </tr> <tr> <td>겨 울</td> <td>248,200원</td> <td>334,800원</td> <td>445,400원</td> <td>583,600원</td> </tr> <tr> <td>총급액</td> <td>277,800원</td> <td>379,000원</td> <td>510,900원</td> <td>677,1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가구	여 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 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급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가구																	
여 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 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급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지원기간	매년 7~9월, 10월~익년4월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사업방식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되는 방식																				
신청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신청</th> <th>심사·선정</th> <th>서비스 지원</th> <th>서비스 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td> <td>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로 선정</td> <td>바우처 생산·발급</td> <td>대상자 상황 관리</td> </tr> <tr> <td>주민센터</td> <td>부천시</td> <td>카드사, 에너지공급사</td> <td>부천시</td> </tr> </tbody> </table>	대상자 신청	심사·선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로 선정	바우처 생산·발급	대상자 상황 관리	주민센터	부천시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부천시								
대상자 신청	심사·선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로 선정	바우처 생산·발급	대상자 상황 관리																		
주민센터	부천시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부천시																		
담당부서	복지과 ☎ 032-320-3000																				
문 의	복지과 ☎ 032-320-3000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기 타	「에너지법」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개 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주택	2억원 이하의 주택				
지원시기	매달				
지원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거래를 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선정기준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				
사업방식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신청·접수하면 부동산과에서 경기도에 이송하여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신청절차	<p>중개보수 신청·접수 → 부동산과에서 경기도에 대상자 관련서류를 이송 → 지원요건 적합여부 검토 → 중개보수 지원금 지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주택매매·임대차계약 대상자→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임차인·공인중개사 </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중개보수 청구 중개보수 청구 서류제출 부동산과 </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관련서류 이송 부천시 → 도(道) 익월 3일까지 부동산과 </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도(道) → 대상자 익월 5일~10일 경기도 </td> </tr> </table>	주택매매·임대차계약 대상자→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임차인·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청구 중개보수 청구 서류제출 부동산과	관련서류 이송 부천시 → 도(道) 익월 3일까지 부동산과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도(道) → 대상자 익월 5일~10일 경기도
주택매매·임대차계약 대상자→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임차인·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청구 중개보수 청구 서류제출 부동산과	관련서류 이송 부천시 → 도(道) 익월 3일까지 부동산과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도(道) → 대상자 익월 5일~10일 경기도		
담당부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032-625-9332				
문 의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032-625-9332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부동산포털 gris.gg.go.kr(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근거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VI. 주거안정 지원서비스



VI. 주거안정 지원서비스

1. 금융관련 지원서비스

■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 센터 운영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소지 등록된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 재무 상담, 불법 추심상담, 복지 연계, 금융교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gcfwccggwf.or.kr), 전화신청(1899-6014), 지점 방문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72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지원대상	변제계획 성실 이행 중(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법원 개인회생 18개월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지원내용	소액대출(연 4% 이내, 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최대 1500만원한도)
신청방법	온라인(http://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문의(1600-5500) 및 지점방문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5

■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원대상	대표가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 저신용·저소득자 : 연간소득 4,7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자 · 사회적 약자 : 은퇴·실직 50대 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사이버보증센터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847

2. 법률 지원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지원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내용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방법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한 상담 예약 접수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234

■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내용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문, 우편, 메일, 팩스)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75

■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무료소송 등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변호사 수임료 지급/수임 변호사 지정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및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한 신청·접수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 세입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내용	주택 세입자에 대한 법률지원
신청방법	전화상담만 가능(시간엄수 : 평일 오전 10시 ~ 정오)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010-4794-0114

3. 생활 지원서비스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내용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https://www.familynet.or.kr) 회원가입 후 신청
문의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6-4212, 1577-9337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등(계좌이체)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및 온라인(http://bokjiro.go.kr) 신청
문의	부천시 여성정책과 032-625-2933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

■ 노인 무료급식 지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내용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청
문의	부천시 노인복지과 032-625-2876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29

4.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39세 미취업 구직 청년
지원내용	경기도 소재 우수 인증기업 매칭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신청방법	참여자 모집기간 중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032-320-3000, 부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625-8432~8 부천일자리카페 032-625-8439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953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일부 사업 만 60세 이상 가능)
지원내용	노인 일자리 제공(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모집 기간 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화 및 방문 신청
신청방법	·‘노인 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온라인 신청 ·※ 지역별 노인 일자리 모집공고, 도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검색 가능
문의	경기도 노인복지과 : 031-8008-2652~4, 2673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 031-222-6026 부천시 시니어클럽 : 032-668-4107 부천시 실버인력 은행 : 032-668-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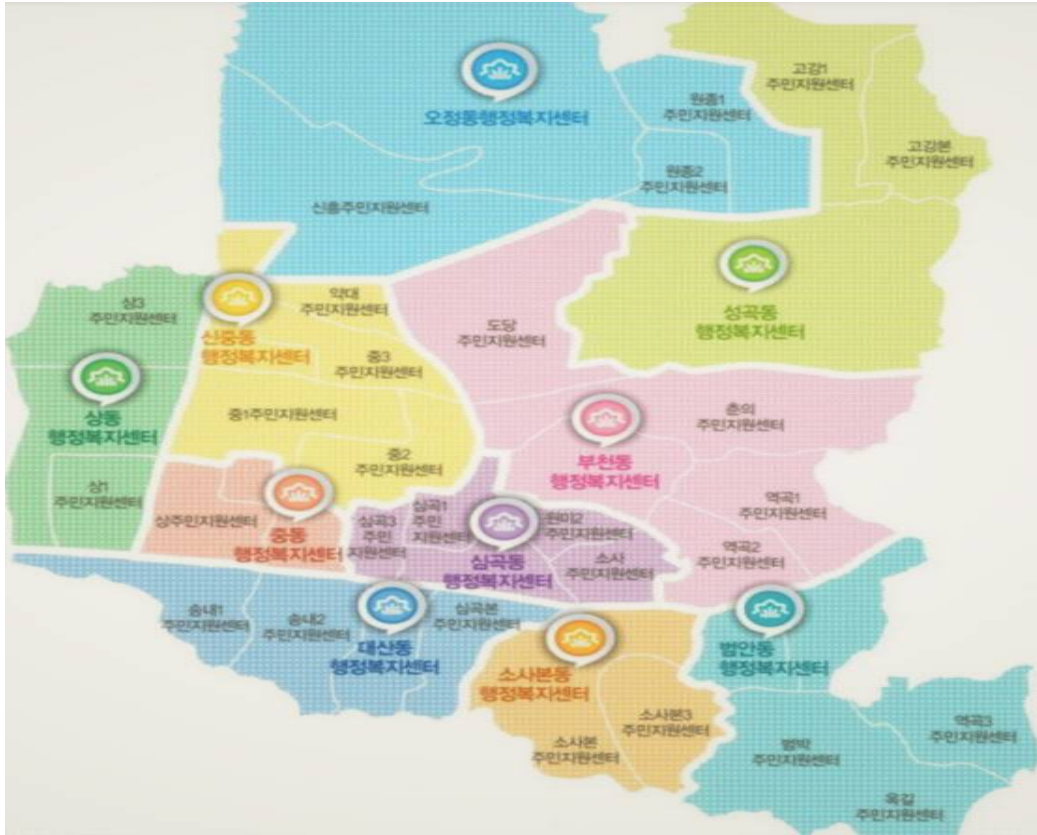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30세 미만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일상생활 훈련, 직무훈련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훈련수당 월 5만원 제공, 계좌이체)
신청방법	전화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320-3000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30-3183

■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 직업 훈련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보유자
지원내용	안마 관련 심화 직업 훈련 및 상담
신청방법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신청
문의	부천시 통합돌봄과 032-625-2831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30-3164

5. 부천시 주민지원센터 및 복지관련 기관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041~4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041~4
심곡1주민지원센터	032-625-7380	심곡본주민지원센터	032-625-7680
심곡3주민지원센터	032-625-7400	송내1주민지원센터	032-625-7700
원미2주민지원센터	032-625-7420	송내2주민지원센터	032-625-7720
소사주민지원센터	032-625-7440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211~4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211~3	소사본주민지원센터	032-625-7740
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	032-625-7460	소사본3주민지원센터	032-625-7760
춘의주민지원센터	032-625-7500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81~3
도당주민지원센터	032-625-7520	범안동 현장민원실	032-625-7780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54	역곡3주민지원센터	032-625-7820
상주민지원센터	032-625-7540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041~3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551~4	고강본주민지원센터	032-625-7840
중3주민지원센터	032-625-7622	고강1주민지원센터	032-625-7862
약대주민지원센터	032-625-756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241~2
중1주민지원센터	032-625-7582	원종1주민지원센터	032-625-7880
중2주민지원센터	032-625-7603	원종2주민지원센터	032-625-7920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721~4	신흥주민지원센터	032-625-7940
상1주민지원센터	032-625-7640		
상3주민지원센터	032-625-7660		

긴급 전화

기 관 명	전화번호	업 무
경기도 콜센터	120	복지 관련 각종 민원사무 안내 및 접수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각종 복지·민원사무 안내, 체납독려, 설문조사 등
복지상담	129	긴급복지지원, 위기대응상담 등
질병정보	1339	감염병 신고 및 질병 정보 안내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상담 및 관련기관 연계
공익제보	031-8008-250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제보 등(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정신건강지원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2-654-4024	부천시자살예방센터	032-242-4512

종합사회복지관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032-612-0726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범박분관	032-719-8180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한라분관	032-324-0725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소사분관	032-719-818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032-653-6131~2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옥길분관	032-713-8181
신중동사회복지관	032-325-216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032-677-9090
상동종합사회복지관	032-252-0420	오정종합사회복지관	032-677-0108
대산종합사회복지관	032-665-606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오정분관	032-681-0110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대산별관	032-665-6062	삼정종합사회복지관	032-323-3162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032-349-3100~2		

노인여가복지시설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032-667-0261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032-683-9290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032-347-9534		

장애인이용시설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670-1100	부천시수어통역센터	032-328-5018
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32-612-4100		

VI. 주거안정 지원서비스

가정복지시설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0-6441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032-328-97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032-667-231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주거복지사업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9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032-340-0985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600-1004 031-250-8362	국민임대 (부천상동3단지관리사무소)	032-231-6300
영구임대주택(LH마이홈)	1600-1004 032-450-8260	주거급여(임차급여)	1599-0001 1600-0777
기존주택전세임대	1670-2593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1599-0001 1600-0777
LH 청약센터	1600-1004	GH 임대주택 청약센터	031-216-7840 031-214-8463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LH 마이홈센터(부천권)	1600-1004 032-450-826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주거복지재단	031-738-4393~7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132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02-132 054-810-0132	경기도위기사담핫라인	031-120 010-4419-7722



부 록

1. 부천시역 공공임대주택 현황
2. 주거복지 관련 사이트
3. 주거생활 가이드



1. 부천시역 공공임대주택 현황

관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영구임대

- 주택단지 개요

단 지 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부천춘의	부천시 원미로 202 춘의주공아파트	976호	1992.05
중동한라1단지	부천시 계남로 123 중동한라1단지	925호	1994.11
덕유마을 주공1단지	부천시 도약로 146	4개동 956호	1994.11
부천옥길LH1단지	부천시 양지로 134 옥길LH1단지	6개동 538호	2016.11

- 임대조건

단 지 명	주택형 (㎡)	공급면적 (전용㎡)	건설 호수	임대보증금 (원)	임대료 (원)	전환보증금 (원)
부천춘의	26	26.37	588	5,787,000	79,980	9,000,000
	31	31.32	388	6,873,000	94,990	11,000,000
중동한라1단지	26	26.37	925	10,128,000	139,000	16,000,000
덕유마을 주공1단지	26	26.37	956	9,931,000	134,540	16,000,000
부천옥길	21A1	21.72	238	11,637,000	91,920	11,000,000
	26A	26.79	30	14,164,000	111,830	13,000,000
	26A1	26.81	146			
	29A	29.62	15	15,729,000	162,390	19,000,000
	29A1	29.72	109			

■ 국민임대

- 주택단지 개요

단 지 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부천상동3	부천시 조마루로 104 (상2동 570-3)하안마을	7개동 636호	2002.11
부천소사2	부천시 은성로 110-1 소사주공2단지	7개동 556호	2006.06
부천여월1	부천시 소사로 639 (여월동 296)	23개동 1,044호	2007.12
부천여월2	부천시 여월로 65 여월휴먼시아2단지 (여월동 320)	21개동 781호	2007.12
부천범박1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 범박휴먼시아1단지 (괴안동 251-1)	17개동 1,473호	2011.05
부천옥길1	부천시 양지로 134 옥길동(701-1)	8개동 916호	2016.10

- 임대조건

단 지 명	주택형 (㎡)부	공급면적 (전용㎡)	건설 호수	임대보증금 (원)	임대료 (원)	전환보증금 (원)
부천상동3	51	51.49	122	19,756,000	272,100	32,000,000
	51	51.95	212	19,930,000	274,990	32,000,000
	59	59.64	302	22,883,000	323,060	38,000,000
부천소사2	51	51.86	556	32,376,000	272,630	32,000,000
	51	51.95		32,478,000	272,630	32,000,000
	51	51.96		32,490,000	272,630	32,000,000
부천여월1	36	36.79	372	16,912,000	170,360	20,000,000
	46	46.71	358	23,473,000	238,740	28,000,000
	51	51.99	214	31,575,000	276,040	33,000,000
	59	59.63	100	38,525,000	335,760	40,000,000
부천여월2	36	36.98	266	16,912,000	170,360	20,000,000
	46	46.71	248	23,473,000	238,740	28,000,000
	51	51.64	200	31,575,000	276,040	33,000,000
	59	59.63	67	38,525,000	335,760	40,000,000
부천범박1	26	26.47	188	13,989,000	174,280	20,000,000
	33	33.96	284	18,075,000	223,930	26,000,000
	36	36.96	370	19,530,000	257,400	30,000,000
	46	46.96	236	39,668,000	311,110	37,000,000
	51	51.91	225	45,613,000	340,790	40,000,000
	33(고령자)	33.96	52	18,075,000	223,930	26,000,000
	46(고령자)	46.96	60	39,668,000	311,110	37,000,000
	51(고령자)	51.92	58	45,613,000	340,790	40,000,000
부천옥길1	29	29	353	15,729,000	162,390	19,000,000
	36	36	320	16,343,000	206,110	24,000,000
	46	46	112	36,122,000	269,610	32,000,000
	55	55.61	44	43,617,000	308,130	36,000,000
	29(고령자)	29.91	48	13,533,000	162,390	19,000,000
	36(고령자)	36.73	33	16,343,000	206,110	24,000,000
	46(고령자)	46.71	6	36,122,000	269,610	32,000,000

■ 행복주택

- 주택단지 개요

단 지 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부천중동1	부천시 중동로 88(중동 814번지)	26호	2018.12
부천옥길	부천시 양지로 151(범박동 68-1 옥길동 786)	270호	2018.11
부천상동	부천시 (상동 463-2)	630호	2023.02

- 임대조건

단 지 명		주택형 (㎡)	공급면적 (전용㎡)	건설 호수	임대보증금 (원)	임대료 (원)	전환보증금 (원)	최대거주 기간(년)
부천중동1	청년	16A	16.34	7	28,760,000	131,810	14,000,000	6
	수급자	16A		2				20
	고령자	16S*		3				
	신혼부부	36A	14	67,200,000				308,000
부천옥길	대학생	16A	16.75	100	25,680,000	107,000	9,000,000	4~6
		26A	26.24		41,200,000	171,660	20,000,000	
	사회초년생	16A	16.75		25,680,000	107,000	9,000,000	6
		26A	26.24		41,200,000	171,660	20,000,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6A	36.14	116	56,800,000	236,660	28,000,000	6~10
		36A-1	36.14		56,800,000	236,660	28,000,000	
	주거급여	26A	26.24	27	41,200,000	171,660	20,000,000	20
		26C	26.49		40,800,000	170,000	20,000,000	
	고령자	26B*	26.40	3	40,400,000	168,330	20,000,000	20
		26A	26.24	5	41,200,000	171,660	20,000,000	
		26C	26.49		40,800,000	170,000	20,000,000	
		36B*	36.30	19	51,811,000	228,210	27,000,000	
36B-1*		36.30	51,811,000		228,210	27,000,000		
부천상동	대학생	16	16.98	160	36,720,000	153,000	18,000,000	6
	청년		16.98		38,880,000	162,000	19,000,000	
	주거급여		16.98		14	32,400,000	135,000	
	대학생	26A	26.77	40	56,440,000	235,160	28,000,000	6
	청년		26.77		59,760,000	249,000	29,000,000	
	주거급여		26.77		36	49,800,000	207,500	
	고령자	26B*	26.77	40	63,080,000	262,830	31,000,000	
	청년(소득無)	36A	36.96	60	76,160,000	317,330	38,000,000	6
	청년(소득有)		36.96		80,640,000	336,000	40,000,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6A	36.96	20	89,600,000	373,330	44,000,000	6~10
	주거급여		36.96	12	67,200,000	280,000	33,000,000	20
	고령자	36B*	36.96	24	85,120,000	354,660	42,000,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4	44.98	224	107,200,000	446,660	53,000,000	6~10	

* 주거약자형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 유의사항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유지
- 주택단지 개요

단 지 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원종금호어울림	부천시 소사로819번길 33(원종동 470)	3개동 8호	2011.05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1단지	부천시 수도로 18(약대동 196)	2개동 106호	2012.03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3단지	부천시 도약로 199(약대동 204)	3개동 210호	2011.10
중동팰리스카운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8개동 273호	2008.12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	부천시 양지로 234-26(옥길동 747-1)	10개동 924호	2016.09
부천옥길B1	부천시 양지로 234-38(옥길동 748-1)	913호	2017.07

- 임대조건

단 지 명	주택형 (㎡)	공급면적 (전용㎡)	건설 호수	임대보증금 (원)	임대료 (원)	전환보증금 (원)
원종금호어울림	59	59.88	8	-	-	-
	84	84.98	8	-	-	-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1단지	39	39.98	54	39,447,000	400,720	57,000,000
	44	44.13	52	44,164,000	449,190	64,000,000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3단지	39	39.98	126	39,735,000	404,270	58,000,000
	54	54.63	84	55,055,000	560,320	80,000,000
중동팰리스카운티	59	59.98	273	-	-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	59A	59.60	660	75,155,000	180,850	26,000,000
	59B	59.95	140	76,598,000	184,320	26,000,000
	59C	59.95	124	76,598,000	184,320	26,000,000
부천옥길B1	74A	74.92	362	64,542,000	504,880	72,000,000
	74B	74.88	87			
	74C	74.96	90	78,075,000	520,500	74,000,000
	84	84.37	374			

2. 주거복지 관련 사이트

공공분양주택 공급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청약정보, 토지분양,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매입 임대 정보 제공
대표번호 : 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재생사업
대표번호 : 1588-0466
홈페이지 : www.gh.or.kr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보 제공
대표번호 : 1600-1004
홈페이지 : www.myhome.go.kr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내 주거복지정보,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주택개량 지원, 주택금융 제도, 기타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ousing.gg.go.kr

공공임대주택청약사이트



LH청약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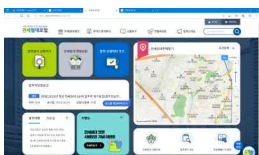
청약과 분양정보, 분양가이드, 인터넷청약, 계약정보조회, 입주정보 제공
대표번호 : 1600-1004
홈페이지 : apply.lh.or.kr



GH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경기행복주택, 청약정보 및 가이드, 인터넷청약, 보증금이자지원 정보 제공
대표번호 : 1588-0466
홈페이지 : apply.gh.or.kr

전세임대포털



전세임대포털

LH전세임대, 월세 지원센터, 전월세 정보, 법률 상담 제공
대표번호 : 1600-1004
홈페이지 : jeonse.lh.or.krjwmain.do



공공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소개, 공급안내,
대표번호 : 1600-1004
홈페이지 : 공공전세주택.com

전·월세 자금지원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대표번호 : 1688-8114
홈페이지 : www.hf.go.kr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디딤돌대출, 청약, 채권,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대표번호 : 1599-0001
홈페이지 : nhuf.molit.go.kr

주거복지 관련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 유지보수, 주거복지 사업 안내
대표번호 : 1670-2727
홈페이지 : <http://www.kohom.or.kr/>



주거복지재단

주거취약계층, 드림하우징, 임차보증금 지원, 상담센터, 후원 안내
대표번호 : 031-738-4393~7
홈페이지 : www.hwf.or.kr

복지



복지로

복지서비스 소개, 온라인 도움, 아동수당 신청, 복지시설 검색, 부정수급신고 제공
대표번호 : 129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상담 안내.
대표번호 : 129
홈페이지 : www.129.go.kr

기타(중개보수료 지원)



경기도부동산포털

경기도 부동산 조회, 공간분석, 시가, 거주환경, 시세, 토지, 건축물대장 조회 안내
대표번호 : 031-120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홈페이지 : gris.gg.go.kr

3. 주거생활 가이드

■ 이사 후 반드시 해야할 일들

• 전입신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신고

※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 본인 신분증 지참

•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신규, 갱신(보증금 변동 있을 경우), 변경, 해지계약이 해당되며,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거나 묵시 갱신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 해당지역 : 수도권, 광역시 및 도(군단위 제외)의 시, 세종시, 제주도

• 주거급여 주거지 변경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말하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

■ 각종 공과금 확인하기

• 공과금 종류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관리비 등

• 전기요금 명의변경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
- 한국전력공사 부천시사(☎032-650-1251, 야간032-123)로 신청

• 도시가스 요금 명의변경

- 이사 후 바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 일주일 전에 전입서비스 예약을 하여야 하며, 이사하기 전 전출·전입을 한번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방법 :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센터(☎1544-3002) 또는 아래 번호로 예약

지역 본부	주소	전화번호	센터 번호
스사	(14726)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24 4층	1544-3002	15
오정	(14460)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 96 (여월동) 유성빌딩 4층	1544-3002	16
중동	(14610)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260 (중동) 삼성빌딩 2층	1544-3002	18

• 상하수도 요금 명의변경

- 부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납부 사이버 창구[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로 신청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제도 알아보기

• 감면 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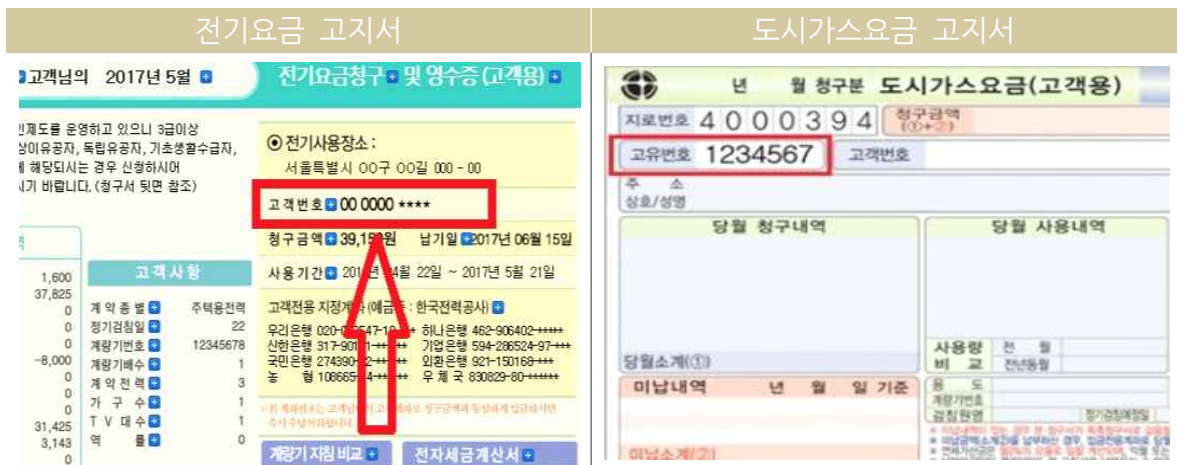
구분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기초연금	이동통신요금
장애인	TV수신료(시청각장애인), 전기요금(심한 장애인),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심한 장애인)

• 신청방법

- 아래 각 요금 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감면 대상	감면기관
TV수신료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032 + 123)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이동통신사 콜센터 문의(핸드폰 114)
도시가스요금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센터(☎1544-3002)


-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일괄 신청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은 **고객번호**를 알아야 신청이 가능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상담문의 032-340-0829

 팩 스 032-662-8096

 홈페이지 http://www.best.or.kr_주거복지

 전자우편 housing@best.or.kr

발행처 : 부천도시공사

제작편집 : 부천시주거복지센터

발행일 2023. 4.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